발 간 등 록 번 호

11-1311000-000080-10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

2022. 1.

본 편람은 "2022년도 실적"에 대한 2023년도 평가편람입니다.





# ◎ 의 목 차

제1편 경영평가 개요 1	
제1절 경영평가 의의 3	
1. 경영평가 법적 근거 5	
2. 경영평가 기본 방향6	
3. 경영평가 등급 부여 8	
4. 경영평가 결과 활용 10	
제2절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13	
1. 경영평가 유형 15	
2. 경영평가 지표체계 17	
3. 평정방법 19	
4.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24	
제3절 2023년 경영평가 개요 25	
1. 2023년 경영평가 대상기관 29	
2. 2023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34	
3. 2023년 경영평가지표 체계 46	
제4절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49	
1. 공통지침 51	
2. 공사·공단 54	
3. 직영기업(상·하수도) 56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59
제1절 공사·공단 공통	61
1. 지속가능경영	64
2. 경영성과	81
3. 사회적가치	82
제2절 평가유형별	105
1. 도시철도공사	107
2. 도시개발공사	121
3. 특정공사·공단	133
3.1 특정공사·공단(공통) ······	135
3.2 특정공사·공단(광역 개별)·····	149
3.2.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51
3.2.2 경기평택항만공사	157
3.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62
3.2.4 제주에너지공사	166
3.2.5 서울에너지공사	170
3.2.6 세종도시교통공사	175
3.2.7 경기교통공사	179
3.2.8 경륜공단(부산스포원)	184
3.3 특정공사·공단(기초 개별) ·····	189
3.3.1 당진항만관광공사	191
3.3.2 청도공영사업공사	195
3.3.3 영양고추유통공사	199
3.3.4 통영관광개발공사	203
3.3.5 장수한우지방공사	207
3.3.6 평택도시공사	212
3.3.7 하남도시공사	218
3.3.8 구리농수산물공사	223
3.3.9 경륜공단(창원레포츠파크)	229
4. 관광공사	235
5. 시설관리공사·공단	263
6.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273
제3절 직영기업	285
1. 상수도	287
2. 하수도	321

\_\_\_\_

\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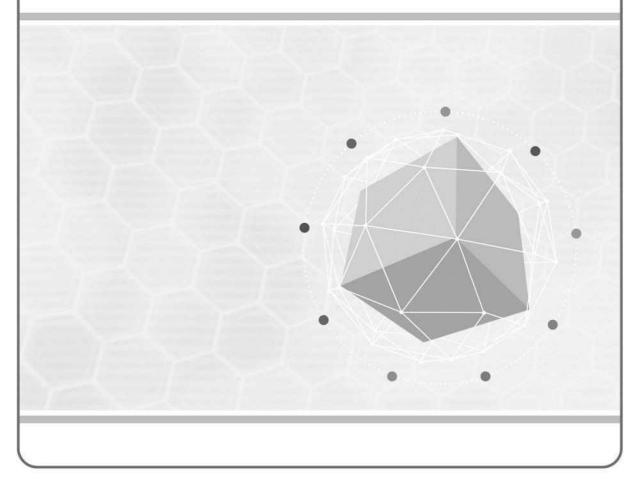
##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 제1절 공사·공단 공통





## 제1절 공사ㆍ공단 공통

## □ 총괄요약표

	ᄌᆸᆯᅱᆢ	비브리프	바	l점	ul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정성	정량	비고	
		1. 경영층의 리더십	5			
- 714 711-7401	리더십 <u>(16점→15점)</u> <u>(△1점)</u>	2. 전략경영	3	2		
I.지속가능경영 ( <u>27점→26점)</u> ( <u>△1점</u> )		3. 혁신성과 <u>(6점→5점)</u> <u>(△1점</u> )	<u>5.1→4.4</u> (△0.7)	0.9→0.6 (△0.3)	<u>조정</u>	
	경영시스템	1. 조직·인사관리	5			
	(11점)	2. 재무관리	3	3		
	주요사업	사업	유형 및 기	관별 상이	l	
п. 경영성과 (35점→37점) (+2점)	경영효율성과	사업유형 및 기관별 상이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일자리확대 ( <u>9점→8점)</u> (△1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u>9점→8점)</u> <u>(</u> △1점)	<u>4.8</u> <b>4.</b> 5 (△0.3)	<u>4.2→3.5</u> (△0.7)	조정	
		1. 소통 및 참여	4	1		
Ⅲ 사회적 가치 (38점→37점) (△1점)	사회적 책임 (29점)	2. 윤리경영	5			
		3. 재난·안전관리	5(4)	5(6)		
		4. 지역상생발전	2	7		
	합겨	I	46.9 (45.9) (46.4)	53.1 (54.1) (53.6)	공사·공단 (도시철도) (도시개발)	

## 1. **지속가능경영**

## □ 리더십

지표명	경영층의 리더십	분류 : 지속가늉경영 - 리더십	관리번호	0-1-	1-1-0
정 의	☞ 경영층이 경영개선고 평가한다.	·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c	더십을 발휘하	하였는	 지 <del>를</del>
ESG	환경(目) 사회(집)	지배구조( ᠖)			
배 점	5.0점(정성 5.0점)			정성	정량
	리더십은 적절한가? - 기관의 경영상 발생하는 - 인권·윤리경영 등 사호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으	역할을 잘 피악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 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과제목표 수준 정도 및 성과평가 이행야! -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생 사		
세부 평가 내용	<ul> <li>②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li> <li>- 기관 핵심기치 공유,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직원 동기부여 및 내부소통 강화 노력과 성과</li> <li>- 임원(ŒO포함)의 교육 실적(연 21시간 이상)</li> <li>※ 승진(신규채용) 임원의 경우에는 최고관리자과정 이수 실적 포함</li> </ul>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고 - 지방자단체와 의회와	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지와의 협력 증전 } 이 협력관계 지원(예산, 사업확보 등) 정도 해관계자 집단과 협력, 유대관계 및 지역(			

- ① 조작체의 사명과 사호적 역할을 잘 파악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은 적절한가?
- △ 경영층은 공기업의 당해연도 (이)사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u>2022</u>년 12월말이후 교체된 경우 포함)에는 당해연도 직무대행자를 의미한다.
- △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은 안전경영, 윤리경영, 인권경영, 공정한 채용, 친환경 경영 등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 △ 기관장 경영성과계약과 성과평가 이행여부는 기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과제선정, 중장기·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한 목표 설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 평가 내용 정의

- ②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의 임원 교육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경영 전문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합교육 실적을 의미한다(기관지정학습 자율 적용 포함).
- △ 임원(CEO 포함)의 교육실적은 전임자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③ 자치단체 지방으회 지역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노력과 성과는 일회성·이벤트성 협력보다는 정기적·지속적 협력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세부 평가 방법

- △ 평가대상연도의 실적과 경영진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전략 등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동산 투기 포함)·부패행위·인사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하거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21년부터 적용).

지표명	전략경영 분류: 지속가능경영 - 리더십 관리번호	0-1-1-2-0					
정 의	조직의 설립목적 구현과 바람직한 미래상 달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전기평가 지적사항, 경영개선명령,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재정균형집행, 개인정보보호 등 국정과제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ESG	환경(目) 사회(집) 지배구조( 집)						
배 점	5.0점(정성 3.0점, 정량 2.0점)	정성	정량				
шн	①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는 적절한가?  - 미션비전 및 전략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추진체계의 실현가능성  - 윤리·인권·친환경 등 ESG 및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 수립  ※ 미세만지 저감대책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장 저감대책 친환경 차량 운영 등 포함						
세부	② 지사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						
평가	②1 전7평가 지적시항 이행실적		-1.0				
내용	<ul><li>②2 경영개선명령 0행여부</li><li>-1.</li></ul>						
	②3 감사원 지적사항 0행여부		-1.0				
	<b>②</b> 4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1.0						
	②5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1.0				

-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는 적절한가?
- △ 미션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지역적합성을 고려한 기업의 사명이고, 비전은 미래 형상과 핵심가치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 미션과 비전은 설립목적 및 자치단체와의 교감과 지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CEO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이해도, 업무와의 연계성과 구체성 등을 확인한다.

#### 평가 내용 정의

- △ 중장기 경영전략은 기관의 중장기적(3~5년 이상)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이다.
  - 경영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이나 1~3년 단위의 각종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다.
  - 중장기경영전략 및 경영계획은 그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윤리·인권·친환경 등) 실현을 위한 공기업의 전략 및 과제도 확인한다.
- ②1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 전기평가 지적시항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2022년(2021년 실적) 이후) 경영평가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23.2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 득점 = {이행률(%) ÷ 100} 1
  - 이행률(%) = 2022년 이행건수/(2021년 말 미이행건수 + 2022년 신규 발생건수)X100

#### ❷2 경영》천명령 이행여부

- ☎ 경영개선명령은 2000.1~2022.12월말까지 통보된 경영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의미한다.
  - 경영개선명령 :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00~'<u>22년</u>), 재무건전성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11.5.8),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명령('10.4.5) 등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은 평가에서 제외
- △ 경영개선명령 중 미이행 사항(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1년 12월말 현재 이행완료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 득점 = {이행률(%) ÷ 100} 1
  - 이행률% = <u>2022</u>2월까지 이행간수/(<u>2021</u>년 평가시 미이행간수 + <u>202</u>1년 신규 자작간수)X100

#### **2**-3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 △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5년 이후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 사항을 감사원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 △ 감사원 지적사항을 미이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할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점수를 1.0점 감점한다.

미이행 <u>건</u> 수	-0.5점	이행완료(0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 -0.5점
이행 적정성	-0.5점	<ul> <li>● 득점 = 이행률(%) ÷ 100 × 0.5 - 0.5</li> <li>● 이행률(%) = 2022년 이행건수/(2021년 말 미이행건수 + 2022년 신규 발생건수)X100</li> </ul>

<sup>※</sup>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내 이행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제외)

#### **2**4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 ▲ 평가기준일 : (신속) <u>2022</u>.6.30. (재정) <u>2022</u>.12.31.
-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 및 대상예산은 행안부에서 최종 통보한 금액으로 하되 경영 평가 확인결과 금액과 다를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한다.

  -   -   제정/시스/지하 므로다셔르까?	재정(신속)집행액	100
●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률(%) =	 재정(신속)집행목표액	× 100

- · 집행대상 예산액 : 2022년 예산액 중 재정(신속)집행대상 예산액
- · 집행목표액 : (신속) '21.2월 확정 목표액 / (재정)'21년 집행 목표액
- · 집행실적 : (신속) 확정 목표액 중 2022. 06. 30.까지 집행실적 (재정) 집행 목표액 중 2022. 12. 31.까지 집행실적
- ※ 정책결정기관에 의한 취소로 신속집행 불가시 해당분 평가제외(객관적 증빙서류)
-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은 추경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한다.

		<ul><li>● 신속집행 목표달성률</li></ul>						
상반기	0.6점	구 분	110%이상	100%이 상	90%이싱	80%0	상 이상	70% 미만
		점 수	0.6점	0.5점	0.4점	0.3전	0.2점	0점
	● 재정집행 목표달성률							
하반기	0.4점	구 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0.4점	0.33점	0.25점	0.18점	0.1점	0점
		⊚ 재정	집행 대상이	계산액 규 <u>.</u>	고비중에 I	따른 가	산점(0.1점)	
가산점	0.1점	구분	A 등급(10%	B ) 등급(2	I	C (30%)	D 등급(30%)	E 등급(10%)
		기즈애	876억원	876억원	미만 3029	원마만	76억원미만	4 IIIIONo
		기준액	이상	302억원	0상 76억	~ 원0상	8억원이상	8억원미만
		점수	0.1점	0.08	점 0.0	)6점	0.04점	0.02점

<sup>※</sup>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 내에서 운영

- ❷5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 준진단 결과(100점 만점)를 1.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결과 안내 : 2022.12.)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된 기관은 공표연도 평가('21년에 공표된 경우 '21년 실적을 평가하는 '22년에 평가)에서 0.5점 감점

● 득점 : <u>2022</u>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0.01

지표명	혁신성과	분류 : 지속가능경영 - 리더십	관리번호	0-1-	1 <del>-3-</del> 0	
정 의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노력과, 수요 창출, 혁신기술 융합, 혁신· 1을 평가한다.				
ESG	환경(區) 사회(중)	지배구조(ⓒ)				
배 점	6.0점→ <u>5.0점</u> (정성 5.	1점→ <u>4.4점</u> , 정량 0.9점→ <u>0.6점</u> )		정성	정량	
	- 혁신 전략 수립 시 주 - 혁신교제 추진예획의 ② 혁신 집행 성과 환류활	지정 등(정량) 1점 - 정성 지표 내 이동) '인 및 내부 직원 참여 정도 적정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동의 적정성 비협력성 노력도, 추진일정의 충실성 등 회 회상 확산 가능성		2.9 ↓ <u>2.5</u> (△0.4)	<u>정량</u> 0.1 → <u>정성</u> 이동 (△0.1)	
세부 평가 내용	<ul> <li>③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li> <li>- 혁신성장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별도 배점 : ❸ 1, ❸ 2</li> <li>-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회를 위한 노력과 성과</li> <li>-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개방 노력과 성과</li> <li>-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과 성과</li> </ul>					
		도달 추진성과(0.7점- <u>0.4점</u> )		<b>0,7</b> <b>0.4</b> (△0.3)		
	❸2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0.8점→0.6점)					
	<ul><li>◆ 적극행정 추진 노력 및</li><li>- 적극행정 추진체계 →</li><li>-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li><li>- 적극행정 추진실적 및</li></ul>	축 정도 -립이 충실성적절성		1.0		

#### 평가 내용 정의

● 혁신 추진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 혁신 전략 수립 시 주민 및 내부 직원 참여 정도란 혁신 전략 수립 전 과정(환경분석 및 세부실행계획 도출 등)에 직원, 주민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였는지를 의미한다.

- △ 혁신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이란 기관의 혁신계획의 비전·목표·전략·과제 등이 혁신 과제 추진계획에 적절히 반영되고, 조직 및 예산 등 혁신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 ② 혁신 집행·성과·환류활동의 적정성
- △ 혁신집행의 적정성이란 자율 혁신 과제 추진시 유관기관 및 내부구성원과의 협업 등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한 과정 및 노력을 의미한다.
- ▲ 혁신 추진성과의 적정성이란 내부 구성원 및 지역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와 타 기관 및 타 지역 등으로 확산 가능 여부를 의미한다.
- △ 혁신 환류활동이란 자율 혁신 과제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과제의 성공요인과 미흡요인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한 실적을 의미한다.
- **3** 핵생장 노력과 성과
- ♂ 공공서비스·혁신기술 융합 활성화란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기관 생산성·업무효율성 향상(혁신기술,loT 기술,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노력 등을 의미한다.
- △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개방 노력이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사업 기회 제공 등을 의미한다.
- △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이란 인력양성, 신상업분야 R&D활성화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제공, 마케팅 지원, 스타트업 지원, 사내벤처 운영 등 공공기관의 자원·역량을 활용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의미한다.

#### **③**1 혁신자향 공공조달 추진성과

연번	구분	주요 내용
5	혁신조달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 실적 및 기관 노력도	혁신조달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실적 및 각부처 혁신조달 관련 노력도(자체 수요발굴, 절차 개선, 홍보교육 등 추진 노력)
6	혁신장터 도전적 수요제시,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한 수요제시	혁신장터 내 수요공급커뮤니티를 통한 도전적 수요제기 실적,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한 수요제기 실적
7	경쟁적 대화방식을 활용한 계약실적*	「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한 계약 실적 (금액, 건수, 필요성 등을 고려)
8	혁신조달 총괄부서 지정 및 구성	기관별 혁신조달 추진 총괄부서 지정 여부 및 구성 결과
9	혁신구매 목표 초과 구매실적	기관별 혁신구매 목표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실적

\* 조달청 "혁신장터" 홈페이지 내 '경쟁적 대화 방식'에 공고된 건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하며, 금액, 건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3**2 핵 구매목표제 달성 실적

- △ 혁신구매 목표(기관 물품구매액의 1.6%) 달성률을 평가
  - 달성률 = (혁신구매액 / 혁신구매 목표액\*)×100
    - \* 혁신구매 목표액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6% (2020년 SMPP 기준)

#### - 혁신구매액 인정범위

연번		구분	주요 내용	
1	우수 국	가R&D 결과물 구매액 (패스트트랙I)	- 패스트트랙 I 혁신제품 구매액	
2	혁신시제품 구매액 (패스트트랙II)		- 패스트트랙 II 혁신제품 구매액	
3	기타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구매액(패스트트랙피)		- 패스트트랙 ㅍ 혁신제품 구매액	
	역신 역지공구매 (기타 역신 구매)	수요기반 혁신구매	- solution 공모형 제품 구매실적 - 기관 자체적 수요발굴, 해결방안 탐색을 통한 제품 구매 - 경쟁적 계약에 의한 제품 구매	
4		시앙 공공 구매 (기타 혁신 구매) 결과물,	실증 사업·테스트베드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트 참여 금액 - K-테스트베드 물품구매 금액
			기타 실적(R&D 결과물, 경진대회 등)	- R&D 결과물 구매액 및 실증경비 - 혁신조달 관련 경진대회·공모전 상금
		혁신성 인증 제품	-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제품 구매 실적 - 일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 ※ 각 실적은 혁신장터에 수기등록이 필요하며 기재부조달청 합동평가단이 인정한 금액만 인정
- ※ 혁신제품 테스트 참여금액은 테스트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에 한하여 테스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 금액 인정
- ※ 혁신지향 공공구매(기타혁신구매) 실적의 경우 기재부·조달청 합동평가단이 인정한 금액만 인정

#### <혁신구매 목표 달성률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계별 점수 부여>

	· ·				
비중	80%이상 ~100%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20%미만
달성률	S	Α	В	С	D
점수(점)	0.8	0.6	0.4	0.2	0

#### ◆ 적극행정 추진 노력 및 성과

△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경영시스템

지표명	조직·인시밀리 분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0-1-	2-1-0				
정 의	☞ 공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해 평가한다.					
ESG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배 점	5.0점(정성 5.0점, 정량 -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ul> <li>③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구조의 적정성</li> <li>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li> <li>설립운영가준 준수여부(관리지 비율, 지원부서 비율 등)</li> <li>협업을 통한 알하는 방식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혁신 노력</li> <li>②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li> <li>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li> <li>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인사규정유급휴가 등), 임원선임 및 직원재용의 적정성 승진 및 보직관리 등</li> <li>내부직원 만족도조사 및 결과활용</li> <li>③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li> <li>교육훈련종합계획 등 역량기호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노력과 성과</li> <li>인사평정에의 교육성과 활용의 적정성</li> </ul>						
	<ul><li>◆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의 구축의 적정성</li><li>- 기관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운영과 결과 활용</li></ul>						
	<ul><li>⑤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li><li>- 여성임원 여성관리자 확대 등 기관의 노력</li></ul>	1.0					
	<b>6</b> 채용비리 방지의 적정성						
	<b>③</b> -1 채용비리 발생 여부		-1.0				
	<b>③</b> 2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시항 이행여부		-1.0				
	③ 임직원 장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		-1.0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구조의 적정성
- ▲ 조직구조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이란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의미한다.
- 2 인사관이 합니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이란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3년 이상의 인력수급, 채용, 전환배치, 보직 및 경력관리, 퇴직관리, 임금피크제 운영 등 종합적 인력계획을 의미한다.
- 조직인사 관련 규정이 관련 법령이나 정부지침(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인사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 △ 직원채용의 적정성은 블라인드 채용, 채용비리방지 등 채용의 공정성을 포함한다.
- 6 양성명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 여성관리자 확대 평가 대상기관은 전체 지방공사공단이나, 당해연도 신설기관은 제외한다.
- 🗸 여성관자는 '여성관자 확대 5개년 로드맵(항정안전부, 2018.4.)상의 관자를 의미한다.
- ☎ 여성임원 및 여성관리자 확대(승진·채용 등)를 통해 여성관리자 양성·역량 교육실시 여부 등 기관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 내용 정의

#### **⑥**1 채왕비리 발생 여부(-1.0점)

- △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
  - 채용비리 발생은 법령,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기관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u>2022</u>.1.1. 이후 지적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수사의뢰, 징계요구는 1건, 주의·경고는 0.5건, 개선·기타는 0.2건으로 본다.

구 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 수	0	-0.2	-1.0

#### **6**2 채왕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여뷰(-1.0점)

- ▲ 미이행 건수로 평가
  -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2018.11.6.~2022.1.31. 실시) 지적사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말한다.

구 분	이행완료	미이행 1건당	미이행 5건 이상
점 수	0	-0.2	-1.0

#### **6**3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

- △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1.0점)
  - 자체 인사규정 정비는 정관, 이사회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임직원의 징계 등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행완료 시점은 규정 시행일로 한다.

구 분	9월까지 정비	10월 정비	11월 정비	12월 정비	미이행
합계	0	-0.2	-0.4	-0.6	-1.0

지표명	재무관리 분류 : 시	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0-1-	<del></del> 2	
평가 유형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경륜공단						
정 의	☞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 "			사업계	획을	
ESG	환경(匡) 사회(⑤) 지배구조	E(G)					
배 점	6.0점(정성 3.0점, 정량 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교 -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 파악과 시전대처방안 수립 노력 - 지속적인 사업비 절감노력 및 성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 분석 실사 ② 예산 화계관리 운영의 적정성 - 예산 과 경영계획과의 연계성 및 3 - 예산전용 이월 및 예비비 사용의 - 예산 및 화계관리의 전산화 및 3 과의 부합여부 - 화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 교육훈련실적 등 ③ 자산관리 적정성 - 자산대장의 전산화 및 고정자산 3 - 재물조사 절차 및 내용 조사결의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	생에 대한 수역 및 성과 과 후 예상되는 ! 지방공기업에 적정성 활사 감사보 글 위한 전도 건별 장부기록 - 등의 적정성	런 보고 및 내 의 증감기록 상태	## 등의 화계규정	3.0		
	<ul><li>④ 예산집행의 적정성(정량 3.0점)</li></ul>					3.0	
	<b>④</b> 1 인건비 인상률 준수(2.0점)					2.0	
	<b>4</b> 2 평기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1.0점)				1.0	

- ♠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공통)
- ▲ 신규사업 진출시 수익/비용분석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제시된 사업별 수지 분석을 의미한다.
- 2 예산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경륜공단)
- △ 예산전용, 이월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거하여 판단한다.
- ❸ 자산관리 및 자산운영 노력 및 성과 (도시철도, 도시개발 평택하남 특정공사 관광공사)
- △ '효율적인 지산운용 노력과 성과란 여유자금 운용의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여유자금의 장·단기 운용수익률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말한다.
- 41 인건비 인상률 준수(2.0점)
- △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 △ 세부평가방법(인건비 인상률 준수 평가) 참고
- **4**2 평대제도 운영의 적정성1.0점
- △ 평가급의 운영이 정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 세부평가방법(평가급 지급의 적정성) 참고
- **6**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
- △ 공사채 발행 및 사용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기준을 준거하여 판단한다.
  - 공사채 발행의 적정성 : 공모절차 미준수시 0.25점 감점
  -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성 : 부적절시 0.25점 감점(발행이자율 부적정은 응찰이율 보다 높은 이율로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기존 높은 이율로 재연장하는 경우)
  - 공사채 집행적정성 : 승인목적 외 집행시 0.5점 감점(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적정성 : 출자시 순자산 내 무수익 및 처분불가자산이 포함된 경우 0.25점 감점
  - 승인조건 이행여부 : 승인조건 이행계획기간 내 이행여부를 평가. 미이행시 0.25점 감점
  - 공사채를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없이 발행한 경우 : 0.5점 감점
  -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 0.5점 감점
  - 발행적정성,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여부 등 치유가 불가능한 항목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그 해에만 감점하고, 출자적정성, 승인조건의 이행여부, 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 운영 등은 위반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점
  - 사전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공사채를 상환하는 시점까지 매년 감점하고,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보증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감점 (단, 2014년부터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

#### 평가 내용 정의

#### **6** 부채율 (해당) 관만 평가)

- △ 부채비율 평가 대상기관 : ① 당해연도 부채비율 150% 이상 공사, ② 당해연도 부채비율 150% 미만 공사 중 전년도 부채비율 150% 이상
  -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 △ 부채비율 평가 시 가중치는 0.5점이고 '평가급운영의 적정성'을 0.5점으로 평가
- ✍ 부채비율 목표

- 최고목표 : 150% - 최저목표 : 300%

#### 세부 평가 방법

△ 정성지표 중 해당이 없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지표명 재무관리 — 인건비인상을 준수 △ 2022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1.0점) - 2022년 총인건비인상률은 2021년 총인건비 예산의 1.4% 범위 내에서 인상(자 연증가분 1.4%한 별도 인정) 세부 \*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 총인건비 인상률 특례사항 제외 평가 △ 2021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0.5점) 내용 - 2021년은 당해 평가결과 점수 활용(<u>2021</u>년 총인건비 인상률 2.8%) △ 2020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0.5점) - <u>2020</u>년은 당해 평가결과 점수 활용(<u>2020</u>년 총인건비 인상률 1.8%) △ 점수 : 기준 준수(만점), 기준 초과(0점) △ (평가대상인원) 총인건비 인상률은 2022년 만근자와 전년도(2021년) 만근자의 인건비 (2개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한다(2022년 총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여부만 적용).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무기계약직, 기간직 등 제외 ▲ (평가 시 제외사항)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및 정부의 평가 정책적 요구(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은 예외(제외) 내용 정의 - 단, 단년도 특이소요인 경우 다음연도 인상률 산정시 초과분은 제외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선택적 복지비 지급·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분은 제외 △ (자연증가분 반영) 자연증가분(호봉승급분, 호봉승급에 따른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인상분)이 총인건비(퇴직자 인건비 제외)의 1.4% 이내 여부도 평가 - 인위적인 급여테이블 조작은 없었으나, 인력분포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예외 인정 △ (총점환산 적용) 신설기업 등 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은 총점환산 적용

지표명	재무관리 — 평기급제도 운영의 적정성
세부 평가 내용	<ul><li>▲ 평가급(자체평가급 포함)의 적정 운영 여부</li><li>- 평가급 운영 : 적정(1.0점), 부적정(0.0점)</li></ul>
평가	<ul> <li>☎ 평가급 지급기준 및 지급률 준수</li> <li>전용대상 :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결정)</li> <li>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 총액(Ceiling)을 결정</li> <li>기관장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li> <li>※ 인센티브 평가급 및 자체평가급 모두 해당(각각에 대한 준수여부 평가)</li> <li>※ 개인별 또는 부서단위 근무성적·업무성과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법인의 내규로 규정하여 시행</li> <li>☎ 퇴사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은 2022년 예산편성기준의 규정에 따라 지급</li> <li>연도 중 입사자(2022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22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2년 평가급(2023년 지급) 지급대상이 아님</li> <li>☎ 평가급 지급제외(대상, 기간 등)는 2022년 예산편성기준의 규정에 따름</li> <li>☎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보완기준 포함) 및 '22년(21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통보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 준수</li> <li>☎ 평가급 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나눠먹기식 배분이 있는 경우 0점 처리</li> <li>☎ 선설기업 등 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 적용</li> <li>☎ 허위사실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평가급 조정</li> </ul>

## 2. 경영성과

## □ 고객만<del>족</del>성과

지표명	<b>□객민결도</b> 분류: 경영성과 - 고객만족도 관리번호	0-2-	3-1-0
정 의	☞ 고객만족도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한다.	,	
ESG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배 점	8.0점(정량 8.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ul> <li>● 평가내용: 고객만족도조사 점수</li> <li>- 고객만족도조사 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당해연도에 일필적으로 실시하는 지방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의 점수를 의미한다.</li> <li>○ 산식</li> <li>평점 = 당해연도실적 × 6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개선도) × 40점 최고목표(개선도) : 천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li> <li>● 최고목표(개선도):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li> <li>● 최자목표(개선도): 0점</li> <li>※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한다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괴할 수 없음</li> </ul>		8.0

## 3. 사회적가치

## □ 일자리 확대

지표명	일자리 경출 및 일 기정 잉글을 위한 노력 분류 시회적기자 일자리 확대 관리번호	0-3-	1-1-0				
정 의	☞ 공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일자리 질 개선 포함)을 및 실적을 평가한다.						
ESG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배 점	9.0점→ <u>8.0점</u> (정성 4.8점→ <u>4.5점,</u> 정량 4.2점→ <u>3.5점</u> )	정성	정량				
	● 청년으무고용비율 달성도		2.0				
	❷ 정원대비 결원 비율 <u>(1.2점→1.0점 축소)</u>		1.2 ↓ 1.0 (△0.2)				
세부 평가 내용	<ul> <li>● 알지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li> <li>- 알지리 창출을 위한 자체 인력은용계획 수랍중장기 인력은용계획의 포함여부</li> <li>- 신규채용 인원의 연도별 증감추세 신규채용시 정규직 채용여부, 결원 대비 신규채용비율 등 신규채용 확대 노력과 성과</li> <li>- 고졸적합직무 발굴 고졸 채용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 실적 고졸직원 후진학제도 등 고졸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및 성과</li> <li>● 알기정 양립 및 알지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li> <li>- 일기정 양립 노력과 성과</li> <li>- 기존 근로자의 알지리 질 개선 및 전환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li> <li>- 지호사 운영실태 평가결과(해당기관)</li> </ul>	<b>4.8</b> ↓ <b>4.5</b> (△0.3)					
	<b>⑤</b> 시전심시제 운영실적		0.5				
	<b>⑥</b>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기점)		(1.0)				

#### ❶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

△ 청년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 고용비율이며, 청년고용의무 이행 실적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 청년 채용인원은 2022년에 인사발령된 인원을 의미한다.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6조 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청년 의무고용 달성도 평가를 제외한다. 해당기관은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④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가중치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❷ 정원 대비 결원 비율(1.0점)

🕰 산식

#### 평가 내용 정의

정의 ✍ 정원 : 정규직(일반정규직 + 무기계약직) 정원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 **③** 알지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자체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실태에 관한 노력과 적절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4 일기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 △ 일기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시간선택제 이행계획 수립여부 및 이용 실적, 유연근무활용실태, 남·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연차 사용현황, 가족친화경영(가족친화 이증제도 획득 여부 등 평가) 등 관련된 기관의 노력을 의미한다.
- △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와 전환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과 성과로 평가한다.
  - 전환근로자의 처우개선 노력은 전환근로자 복리후생 강화노력(사내근로복지금 등), 전환근로자 조직 융회를 위한 노력, 무기계약직 및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서울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고용노동부)를 반영한다.

#### 6 사전시사제 운영실적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실적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 횟수 대비 사전심사 횟수비율\*로 평가한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미도입
100%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o o저
0.5**	0.4	0.3	0.2	0.1	0.0점

- \* 기간제 채용 횟수는 채용 공고 기준, 파견 용역 사용 횟수는 계약건수 기준
- \*\* 사전심사제도는 도입했으나 운영실적이 100%이거나 기간제, 파견·용역 사용횟수가 없는 기관도 포함

#### 6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기점

- ▲ 체험형 일자리
  - 목표달성률(0.5점)

산식 = (채용인원 ÷ 채용목표) X 0.5점 (단, 0.5점을 상한으로 함)

정원	~100	101 ~200	201 ~300	301 ~500	501 ~1000	1001 ~2000	2001 ~5000	5001~
채용 목표	1	2	3	4	5	10	20	80

- 체험형일자리 채용한 기관 중 정원대비 채용인원 비율(0.5점) 산식 = ( <u>2022</u>년 채용인원 ÷ <u>2022</u>년말 정원 ) X 100

구분	채용인원 비율 상위 10% 이상	10% 미만~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70% 이상	70% 미만~ 100%
점수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 정원: 정규직(일반정규직 + 무기계약직) 정원
- △ 채용인원 비율은 공사·공단 전체 순위에 따라 단계별 비율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
- ▲ 채용인원의 경우, 당해연도 실제 근무기간이 주간 40시간1개월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실적 인정(상한 1명 : 40h·2개월=1명, 20h·2개월=1명, 20h×1개월=0.5명)

## □ 사회적 책임

지표명	소등 및 참여 분류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0-3-	2-1-0	
정 의	☞ 내·외부고객(고객, 주민, 노사 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 참여시켜 만족도 제고 및 노시상생 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ESG	환경( <b>日</b> ) 사회( <b>S</b> ) 지배구조( <b>G</b> )			
배 점	5.0점(정성 4.0점,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ul> <li>고객 및 주민의 경양참여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양하는가?</li> <li>고객 및 주민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실적</li> <li>고객 및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기관개선 실적</li> <li>고객 및 주민 만족도 평가와 환류채계 구축</li> <li>살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 및 유지 노력은 적절한가?</li> <li>노사 상생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과 목표 설정 및 실천노력과 성과</li> <li>노시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시스템 구축 운영 노력과 성과(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피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포함)</li> <li>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의 적절성 및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 또는 성과는 적절한가?</li> <li>단체교섭과 노사협의함를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li> <li>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li> <li>노사협의함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증진 노력과 성과</li> <li>괴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노력</li> </ul>	4.0		
	♣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충실한가?		1.0	
	◆1 공사항목 및 자료입력가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0.3	
	◆2 클린이이 잡플러스 채용정보 입력 준수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0.2	
	<b>④</b> 3 시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의 충실성 등		0.5	

- ① 고객 및 구민의 경영참여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 △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는 경영계획, 집행, 평가, 환류 등 경영주기별 고객 및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간접적 참여와 주민참여 예산제, 옴부즈만 등 직접적 참여를 모두 포함하다.
- ❷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시관계 구축 및 유지 노력은 적절한가?
- ♂공공 노사관계란 근로조건 유자·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통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 ▲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갈음하여 평가한다.
- ③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으회 운영의 적절성 및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 또는 성과는 적절한가?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 여부 포함), 불합리한 단체협약서(이면계약서의 부당사항 포함),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등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적법한 이행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노력은 기관별 기 제출한 「2014년 기관별 복리후생 정상화계획」에 의한 미이행 건과 신설 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평가 내용 정의

- 평가 41 공사항목 및 자료입력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평가 준
  - ⚠ 자료입력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및 개인정보, 조달청 G2B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재하여 진행한 입찰공고는 제외한다.

구분	배점	평가기준
공시기한 준수 (정기 공시)	0.1	·정기(연간) 공시 기한 : 준수(0.1점), 미준수(0.0점) ·정기(반·분기) 기한 : 1건당 0.02점 감점(최대 0.1점 감점)
공시자료 정합성 (정기 및 수시공시)	0.2	·누락, 오류, 지연(수시공시)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2점 감점)

- △ 정기공시(반분기) 누락 건수는 공시자료 정합성 항목에서 평기한다.
- ♠2 클리아이 잡글라스 채용정보 입력 준수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평가 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입력준수 및 충실성	0.2	·누락, 오류, 지연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2점 감점)

- ♠3 사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의 충실성평가 ?
- ▲ 사전정보공표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가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 행정안전부 평가결과를 0.5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지표명	요리경영 분류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0-3	2-2-0
정	▼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기관 내외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SG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배 점	5.0점(정성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ul> <li>●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고는 적절한가?</li> <li>관련 내부규정 제도화(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및 내부통제사스템 구축의 적절성</li> <li>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노력</li> <li>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교육, 홍보 등)</li> <li>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시후조치 적절성</li> <li>도덕적 해이나 관리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 등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li> <li>② 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li> <li>기록관리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li> <li>기록물관리 전담인력 지정 여부</li> </ul>		
	<ul> <li>❸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는?</li> <li>-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여부</li> <li>- 기관(공기업) 내와(부서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확산 노력과 성과</li> <li>-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여볶계획 교육 평가 공개 등</li> </ul>	5.0	
	<ul><li>◆ 인권경영사업의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절차 제도화의 타당성</li><li>- 인권경영사업의 실행 및 인권경영 전 과정의 공개</li><li>- 구제절차의 수립 및 사행 사항에 대한 평가와 개선 성과</li></ul>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모범가래모델 도입 여부 등 불공정 가래 개선 및 공정가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약증진 노력과 성과  - 기회교등과 공정경쟁 조성의 노력과 성과  - 갑질근절방안(공기업정책과 1805, '18. 6. 1.), 작장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용)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설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은 예방교육 내실화(기관장·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 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설치,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자로 제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내용) 등을 의미한다.
- ✍ 성희롱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기한다.
- ② 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 기록관리 체계 구축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인력 지정, 기록관리 시설장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을 의미하며,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지정은 업무분장 등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와 역할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 평가 내용 정의

- 평가 (8) 안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는?
  -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미를 대나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 ☑ 인권경영 기본계획, 선언문, 영향평가 보고서, 실행실적 보고서, 구제절차 시행 및 평가 보고서 등의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 단, 각 보고서를 통합한 최종보고서가 있는 경우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 ④ 인권경영사업의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절차 제도화의 타당성
  -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은 인권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방지조치와 실행방법을 전달하여 실제 실행한 실적과 성과를 의미한다.
    - 구제절차의 제도화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를 원상 회복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 △ 구제절차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절차로써 제도화는 구제절차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의미하고 대상은 내부직원,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하며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은 제도 운영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실적을 의미한다(개선실적 없는 경우 기관의 상황 및 내용 고려하여 평가)

#### 6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 공정사회란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성평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 ✓ 모범거래모델 도입이란 부당계약 자가 진단 실시, 청렴계약서 징구,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 등 소비자 권리보호 준수 등을 의미한다.
- ▲ 갑질이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을 의미한다.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은 주기적인 실태 설문조사, 예방교육,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한다.
- ▲ 갑질 근절방안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추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 준수 여부를 의미한다.

#### 기타 사항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동산 투기 포함)·부패행위·인사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하거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있다.

지표명	재 <b>난·인전</b> 관리 분류: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관리번호	0-3-	<del>2-3-</del> 0
정 의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근로지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10.0점(정성 5.0점, 정량 5.0) ※도시철도(정성 4.0점, 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ul> <li>● 근로지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재난 안전관리체계는 적절한가?         <ul> <li>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재난 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li> <li>재난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투압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li> <li>안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li> </ul> </li> <li>② 구축된 재난 안전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재난 안전관리 역량강화 노력은 적절한가?         <ul> <li>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사고 대응력 향상 노력의 적정성</li> <li>안전관리 전담 인력 안전교육 이수 여부</li> </ul> </li> <li>③ 재난 안전관리체계 운영은 적절한가?         <ul> <li>재난 안전사고 시전예방 대응 시후처리 및 복구활동의 적정성</li> <li>근로지와 국민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산업재해 예방교육 포함) 및 홍보</li> <li>안전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점사항 개선 이행의 작정성</li> </ul> </li> </ul>	5.0 (4.0)	
내용	<ul><li>♣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li><li>- 일반기관 (-1.0)점 중점기관 (-1.5)점으로 평가</li></ul>		-1.0 (-1.5)
	⑤ 개난안전사고 (유형별 상이)           ⑥ 1 도시철도: 철도직원 안전사고 발생간수           ⑥ 2 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사업자해 발생간수           ⑥ 3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안전도평가자수           ⑥ 4 광역특정(세종제외), 기초특정 시설관리공단(운수사업 없음)           : 안전사고 발생간수           ⑥ 5 시설관리공단(운수사업 병행: 안전사고 발생간수 + 교통안전도평가자수           ⑥ 6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산업자ій율		5.0
	★ 국가 주관 재난만명가 (도시철도공사만 해당)		(1.0)

- ①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재난 안전관 체계는 적절한가?
- ☎ 재냔안전관리체계란 재냔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축된 계획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 △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재난안전 관련 훈련 및 교육, 매뉴얼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지정된 안전책임관을 포함해 재난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관라감독자 및 실무자를 의미한다.
- ②구축된재산안전만체계가원하은양될수있도록하는 기관이재산안전만이역당화노력은 적절한가
- ▲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란 내외부 재난안전 교육, 재난안전 긴급상황 시나리오 설정 및 시나리오별 대응훈련(자체훈련,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등), 상시·비상시 개인별 역할 및 책임부여, 직원들의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해 갖춘, 재난안전 상황 발생시 전체 직원들의 대처 역량을 의미한다.
- **③**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은 적절한가?

#### 평가 내용 정의

- △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이란 안전 관련 법적의무사항의 이행, 사업장별 사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직원별 담당구역 지정, 외주업체 안전관리 등에 따른 공기업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 및 상시적 관리 노력을 의미한다.
- ፫ 안전사고 사후처리 및 복구활동이란 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및 보상,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사고이력 정보관리 등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 △ <u>안전관련 법령이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기본법」등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전안전부 공기업정책과</u>) 등을 의미한다.
-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은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 과제 등을 포함한다.
  - 평가 산식 : 이행률(%) = 이행건수/과제 수(일반기관4건, 중점기관 5건)X100
    - · 일반기관 : 득점 = 이행률(%) ÷ 100 1.0
    - · 중점기관 : 득점 = 이행률(%) ÷ 100 × 1.5 1.5
- △ 이행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해당 없는 경우 영점 처리

- **⑤** 재난인전사고: 상세평가내용(유형별기관별) 참조
- **③** 국가 주관 재난관(평가(도시철도공시만 해당)
- △ 도시철도공사유형 재난안전관리는 정성 4.0점, 정량 1.0점으로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전년도 1~12월 기준 평가, 4월 발표)	0.30	0.24	0.15
국가기반체계재난관리평가 (전년도 9~10월 기준 평가, 11월 발표)	0.30	0.24	0.15
철도안전관리수준평가 (전년도 1~12월 기준 평가, 3월 발표)	0.40	0.30	0.20

#### 세무 평가 방법

- 세부 △ 정성 및 정량 평가 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지표명	⑤-1 도시철도 : 철도·직원 안전사고 발생건수		
정 의	☞ 철도사고, <u>철도준사고</u> , 철도재난 등 도시철도사업 관련 안전사고 발 직원 산업재해보험 처리 건수를 의미한다.	생건수	- 및
배 점	5.0점 (정량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① 철도안전사고 발생건수(건) = (철도사고 + 철도준사고, 철도재난) / <u>운행100km</u> -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간수 - 기준치 +1) 안전사고 발생건수  ③ 기준치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② 직원 안전사고 발생건수(건) = 직원 안전사고 / 직원 천명 -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간수 - 기준치 +1) 안전사고 발생건수  · 상기 · · · · · · · · · · · · · · · · · ·		3.0
평가 내용 정의	●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② 철도안전사고 발생건수(건)  ② 철도사고에 대한 정의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습 규칙 고시 「철도사고장에 철도처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서 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 말한다:  ② 철도준사고 :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말한다.  ② 한장장에 :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처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무정차통과와 '지연운행'을 말한다. 단,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증빙서류 확인)은 운행장에 건수에서 제외한다.  ② 철도재난 : 재난이라 함은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자율보 사고 사고 있었던 것으로 상 또는	고에 하여 등을 것을 러' 지연

#### ❷ 직원 안전사고 건수(건)

△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측정한다. 다만,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 사고도 포함한다)·스포츠단 훈련 및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운영체육행사·폭력 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하고, 2개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u>단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도시철도건설 공사현장 제외</u>)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 △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세부 평가 방법

- ▲ 철도 안전사고 건수 평가자료 제출양식은 국토부 철도사고 보고 지침 별표 3(철도 사고등의 분류기준)의 양식과 동일
- △ 신설 무인노선의 경우 개통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0%,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직원안전사고 평가는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한다.
-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표명	<b>⑤</b> -2 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 <u>산업재해 발생건수</u>			
정 의	☞ 일반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등 기관 발 <del>주</del> 공사의 사고사망자 발생건수를	의미현	<u>한다.</u>	
배 점	5.0점 (정량 5.0점)			
세부 평가 내용	○ 평가내용 : 산업재해 발생건수         - 산업재해 발생건수(건)= 일반재해+(중대재해×2)+(사망사고×3)         ○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간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준치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5.0	
평가 내용 정의				
세부 평가 방법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 -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  ☑ 재해자수, 중대재해자수 및 사망자수는 이용가능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은 기관 내부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  ☑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사고 포 사고 프 안전공(	함 포함 단)와	

지표명	<b>⑤</b> −3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정 의	☞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로 평가한다.					
배 점	5.0점 (정량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평가내용  평점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5.0			
평가 내용 정의	- 교통사고 사상자수 = 사망간수 × 1.0 + 중상간수 × 0.7 + 경상간수 × 0.3   ▲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경상사고에 대한 정의(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3의2])는 다음과 같다.  - 사망사고 :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중상사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경상사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당사자 사고를 포함하고 경상 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시망자 1명은 '1'을 각각 기중치로 적용한다.  ▲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의한 별표3의2, 3의 계산식을 따른다.					
세부 평가 방법	<ul> <li>☎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li> <li>-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li> <li>-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li> <li>☎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li> <li>☎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li> </ul>	사고 포	함			

지표	명	⑤-4 광역특정(세종제외), 기초특정, 시설관리공단(운수시업 없음) : 안전시고 빌	생건수
정	의	☞ 안전사고는 내·외부 고객과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점	<u>탄</u> 다.
배경	점	5.0점 (정량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7 내용	· '}	● 평가내용: 안전시고 발생간수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시고발생간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30억(세종제외)·기초특정 기준치: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 시설관리공단(운수시업 없음): 전년도 실적 (최소값 2건)	5.0
;	가	<ul> <li>▷전사고란 대안대물사고(공단차량 사고, 직원안전사고 포함)를 모두 의미하며 : (지방자)단체 포함)이 보험처리를 완료한 간수로 측정(소송 및 재판이 진행 중인 화정된 연도 평가시 반영)한다. 다만, 고객 또는 사고 원인이 미상 등으로 지방공 귀책사유가 없는 안전사고(구내치료비 처리 건)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li> <li>1건의 안전사고를 통해 피해(대인 또는 대물)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복수의 안전사고로 평가한다.</li> <li>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임에도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기업(지방자)차단체 포함)이 등 직접 비용지급 처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포함한다.</li> <li>공사-공단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50% 미만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여 사고 발생건수에서 제외한다.</li> <li>사망, 중상, 반소 이상, 소방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제시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li> <li>단, 사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상을 참작(법원판결문, 의사소견 등의 증명 확 중상은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가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상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2009. 2. 27, 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li> <li>반소는 화재로 인해 건물의 30%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건물은 시설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단위사업장 전체를 말한다.</li> <li>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측정한다. 다만, 출퇴근시 발생한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순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사고도 포함한다)·스포츠단 훈련 및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운영체육행사 항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하고, 2개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li> </ul>	나고입 해 보상 인 화 시 상등에 당을청, 재교폭력 바다 내 보상 이 자 시 상등에 당을청, 대통력
세 <sup>‡</sup> 평7 방 <b>t</b>	가	<ul> <li>전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 -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를 -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li> <li>△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규모로 차감 조정한다.</li> <li>△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li> <li>△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li> </ul>	E함 포함

지표명	⑤−5 시설관리공단(운수시업 병행) : 안전시고 발생건수 + 교통안전도평	기지디	}
정 의	☞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평가한다. ☞ 시설관리와 운수사업을 병행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적용한다.		
배 점	5.0점 (정량 5.0점, 배점은 기관별 상이)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안전시고 발생건수  평점 = 7[전치 × 90% (안전시고발생간수 - 7[전치 +1)] 안전시고 발생건수  의 기준치 = 전년도 실적 (최소값 2건)  ②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평점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2.00 × 50점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교통시고발생건수×0.4) + (교통시고 시상지수 ×0.6) × 100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의 교통시고 발생건수 = 시망건수 × 1.0 + (상해건수 × 0.5) 의 교통시고 시상지수 = 시망건수 × 1.0 + (상해건수 × 0.5)		5.0
평가 내용 정의	<ul> <li>● 안전사고 발생간수</li> <li>△ 안전사고 건수는 운수사업(공영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제외한 모든 포함한다 (★) 4 안전사고 발생건수 참조).</li> <li>② 교통안전도 평가지수</li> <li>△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운수사업(공영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관련 교통 건수와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의미한다 (★) 3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참조).</li> </ul>	탕사고	
세부 평가 방법	<ul> <li>점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li> <li>(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시 .</li> <li>(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li> <li>△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배점은 전년도 안전사고 발고려하여 0.5점 단위로 각각 배분한다.</li> <li>△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규모로 차감 조정한다.</li> <li>△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li> <li>△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li> </ul>	ト고 포 사고 ヨ ト생 비	함 포함 중을

### 지표명 6-6 환경시설관리공사 · 공단 : 신업재해율 ☞ 고유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정 의 성과를 산업재해율로 측정하여 그 감소 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5.0점 (정량 5.0점) 정성 정량 ○평내용 재해자 수 산업재해율 = <u>세에서 구</u> 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 × 100 세부 평점(사업유형별)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평가 5.0 내용 득점 = ∑ <u>사업유형별 평점 × 사업유형별 가중치</u> × 100 ➡ 최고목표 =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해율 × 50% ➡ 최저목표 =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배율 x 150% △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유형별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산업 재해율을 말한다. 평가 내용 △ 사업유형별 기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해당 사업유형의 업종구분 및 재해율 사정이 정의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유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 사업유형별 가중치는 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 직원 산업재해건수 산정시 출퇴근시 발생한 건수,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세부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 스포츠단 훈련 및 평가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운영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하고, 2개 연도 방법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표명	지역상생발전 분류 : 사회적 가치 - 사회적 책임 번호	0-3-2	<del>-4-</del> 0			
정 의	☞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행한 다양한 사회공 및 구매실적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당헌 홀	<u></u> 발동			
배 점	9.0점(정성 2.0점, 정량 7.0)					
	● 지역사회경제 공헌  -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성과  - 생활 SCC등 지역숙원사업 해결 노력 및 성과  -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실적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주민참여 리방랍(Living Lab) 등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력과 성과	2.0				
	<ul> <li>▶ 사호적 약자 배려</li> <li>- 유료시설의 무료감면 수혜자수(금액) 확대 노력 및 성과</li> <li>- 사호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사후평가</li> <li>-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고졸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기정 등 사호적 약자 고용 노력 및 실적</li> </ul>					
세부	②1 장애인 의무고용(정량 1.0점) 및 고용 노력(가점 1점 미달 점수의 50%)					
평가	❸ 지역상생 구매 실적					
내용	❸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 및 지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					
	<b>3</b> -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성과 <u>(0.5점0.4점)</u>		0.4			
	③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과( <u>0.5점→0.4점</u> ) 1.0		0.4			
	<b>③</b> 4 <u>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신규 0.2점</u>		0.2			
	❸5 중증장에인생산품 우선 구매		0.5			
	③6 성과 <mark>공유제 및 <u>협력이익공유제 과제 등록 실적</u> ※ 선택형</mark>		0.5			
	❸-7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실적(기점)		(0.5)			
	<ul><li>◆ 친환경 경영실적(기관별 상이 : 광역 - 유형 I 또는 Ⅱ, 기초 - 유형Ⅲ 또는 IV)</li></ul>		2.0			
	④1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b>4</b> 2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④3 찬환경차량 구매암차 실적					

- 지역사회경제 공헌
-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란 지역에 위치한 지방공기업과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 ❷ 사회적 약자 배려
- △ 사회적 약자란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자 등을 의미한다(헌법 제32조 제4항·5항, 제34조 제3항~5항).
- 🖾 국가유공자 취업대상자 관련 사항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따른다.
- ②1 장애인 의무고용(정량 1.0점) 및 고용 노력(기점 1점 미달 점수의 50%)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 ☎ 장애인 고용 노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고용컨설팅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배점(1점)에 미달하는 점수의 50%를 보전한다.

득점 산식	비고
X=0 → 0점 X ≥ [Y × 3.6%] → 1.0점 0% <z<3.6% 3.6×1.0점<="" td="" z="" →=""><td>X = 6월과 12월의 장애인근로자수 합 Y = 6월과 12월의 상시근로자수 합 Z = X/Y×100% * 상시근로자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 장애인근로자수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예) 60시간이상 중증 1명, 60시간미만 중증 3명, 60시간이상 경증 5명 → (1명×2명)+3명+5명 = 10명 * 장애인 고용비율 산출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Y × 3.6%]는 Y × 3.6%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우스기호)</td></z<3.6%>	X = 6월과 12월의 장애인근로자수 합 Y = 6월과 12월의 상시근로자수 합 Z = X/Y×100% * 상시근로자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 장애인근로자수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예) 60시간이상 중증 1명, 60시간미만 중증 3명, 60시간이상 경증 5명 → (1명×2명)+3명+5명 = 10명 * 장애인 고용비율 산출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Y × 3.6%]는 Y × 3.6%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우스기호)

### 평가 내용 정의

- ③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 및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
- △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생산품 구매 실적(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 등 대상기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적은 주무 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득점 산식	비고
$\frac{X}{2\%} \times 2$ 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용역 구매율(%) ※ 2%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2 부여 *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 **3**-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성과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 자료를 반영한다.
- ❸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과(상생협력제품 구매 포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 자료를 반영한다.
- **③**4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 ፳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 자료를 반영한다.
- **③**5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득점 산식	비고
$(0.7 \frac{X}{1\%} + 0.3 \frac{Y}{3\%}) \times 0.5점$	X = 총 구매액(공사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액비율,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Y = 전년대비 증가율, 3% 초과시 최고값 1 부여 * Y<0의 경우 '0'점 부여 * 단, X값(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인 기관은 Y산출값에 관계없이 최고값 1부여

#### ❸6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과제 등록 실적(0.5점) ※ 선택형

- 설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요령(중기부 고시 제2021-40호)」참조).
- △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 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 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 ☞ 평가년도 과제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건수로 평가하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 자료를 반영한다.

배점		0.5점	0.3점	0점
등록	광역	<u>4건 이상</u>	<u>2~3건</u>	1~0건
과제수	기초	3건 이상	<u>2건</u>	0건

#### ③7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실적(가점)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이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상생결제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8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상생결제 지급실적(%) = <u>1차 거래기업 상생결제 지급실적</u> × 100
  - 총 구매실적은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물품, 용역, 공사의 합으로 등록된 실적이며,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10% 이상	1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 이상	5% 미만 ~2.5% 이상	2.5% 미만 ~0%

- 상생결제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 ♠ 친환경 경영실적(기관별 상이)

△ 친환경 경영실적은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률, © 친환경 차량 구매실적 가중치는 아래 방식에 따른다.

ᄀᆸᄱᆀᄌ	광	광역		기초	
구분(배점)	I 유형	Ⅱ유형	Ⅲ유형	IV유형	
⇒녹색제품구매실적	0.8	1.0	-	-	
© 온실가스감축율 (탄소배출권 포함)	0.8	1.0	2.0	1.0	
応친환경차량구매	0.4	-	-	1.0	
합계	2.0	2.0	2.0	2.0	

#### ♣1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의미한다(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참조).
- ☎ 환경부에서 확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2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과 탄소배출권 할당량 및 실적은 환경부에서 확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주무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확정안을 인용할수 있다.
  - (탄소배출권-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최근 3년간 온실 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업체 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③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률 대상 공기업. © 탄소배출권 할당량 대상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공기업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Y) = \frac{감축률}{기준감축률} \times 100$

- © 탄소배출권 할당량 대상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광역환경공단(대전 제외), 서울 에너지 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Y) = <u>감축량</u> × 100
- © 위 ○+○ 대상 공기업: 대전시설관리공단 (※ 배출량 비중에 따라 ○, 배점 조정) - 관련 기준이 변경된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에 확인 후 조정할 수 있다.

#### ◆3 친환경사량 구매암차 실적

-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평가 대상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100% 이상을 구매 또는 임차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
  - 구매임차 실적(%) = ∑(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 환산비율) × 100 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 대수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다고세지도† 조리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4조 지고해지도1	전기차 1.5	전기차 1.7	
제1종 저공해자동차	수소차 2.0	수소차 2.0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1.2	
제3종 저공해자동차	0	1.0	

△ 친환경차량 구매실적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기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환경부 기준과 환경부에서 제공한 실적자료를 따른다).

### 세부 평가 방법

평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 제2절 평가유형별





5

# 시설관리공사·공단



## 5. 시설관리공사공단

### □ 총괄요약표

	ᄌᆸᆯᅱᆢ	비난지교	바	점	ul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정성	정량	비고
	리더십	1. 경영층의 리더십	5		
I.지속가능경영	( <u>16점→15점)</u> ( <u>(</u> △1점)	2. 전략경영	3	2	
( <u>27점→26점)</u> ( <u>△</u> 1점)	<u>(Δ14)</u>	3. 혁신성과 <u>(6점→5점</u> )	<u>5.1→4.4</u> (△0.7)	<u>0.9→0.6</u> (△0.3)	<u>조정</u>
(Δ18)	경영시스템	1. 조직·인사관리	5		
	(11점)	2. 재무관리	3	3	
		1. 시설유지관리 및 <u>활성화 노력</u> <u>(5점→6점</u> )	<u>5→6(4)</u>		<u>조정</u>
	주요사업 <u>(17점</u> →19점)	1-1.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관리형 공사)	<u>(2)</u>		신규
_ 3043	(+2 <u>A</u> )	2. 사업수입		7	
<b>п.</b> 경영성과 (35점→37점)		3. 1인당시설관리실적 <u>(5점→6점</u> )		<u>5→6</u> (+1점)	<u>조정</u>
<u>(+2점)</u>	경영효율성과	1. 대행사업비절감률		8	
	(10점)	2. 노동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일자리확대 (9점→8점) (△1점)	1.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u>(9점→8점)</u>	<u>4.8</u> →4.5 (△0.3)	<u>4.2→3.5</u> (△0.7)	<u>조정</u>
표 사회적 가치		1. 소통 및 참여	4	1	
(38점→37점) (△1점)	사회적 책임	2. 윤리경영	5		
	(29점)	3. 재난·안전관리	5	5	
		4. 지역상생발전	2	7	
		합계	46.9 →46.9	53.1 →53.1	

### □ 주요사업

지표명	시설유지만리 및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시업 관리번호	5-2-	1–1–0
정 의	☞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기하는 기관의 유지관리 노력 및 <u>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u>	지관리	하기
배 점	5.0점→6.0점(4.0점) 정성	정성	정량
세부평가내용	● 효율적 유지만분를 위한 시설물 유지만체계는 적절한가?  - 성능평가 중심의 시설물 연간 관리계획 및 중기 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시설물 유지만리 조직 구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 유지만리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  ② 구축된 유지만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만의 유지만리 역량양화 노력은 적절한가?  - 시설물 유지만리 관련 직무교육 계획 및 실행의 적정성  - 전담 인력의 전문성 항상 노력의 적정성  - 전담 인력의 전문성 항상 노력의 적정성  - 유지만리 전문기술 확보 노력의 적정성  - 웨전 유지만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만리 활동은 적절한가?  - 예방적 유지만리 활동의 적정성  - 시설물 관리 정보 구축 및 활용의 적정성  - 시설물 생능평가 기반 유지만리 활동의 적정성  - 관련 안전 법규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과 이에 따른 개선 이행의 적정성  ①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은 적절한가?  -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 노력  - 주요라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시업모델 개발적용 노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등 시호점 약자 바려 노력  - 찬환경 기술 적용 및 품질 사비스 항상 노력  - 찬환경 기술 적용 및 품질 사비스 항상 노력	5.0 <u>6.0</u> (4.0) (+1)	

- 1 효율적 유지관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에게는 적절한가?
- 🖎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란 자산의 상태 및 잔여서비스 수명과 예산을 고려하고 생애 주기 비용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 내용을 의미하다.
- ② 구축된 유지만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만이 유지만리 역량정화 노력은 적절하기?
- △ 시설물의 유지관리 역량강화란 관련 조직과 인력이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자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효율적 유지관기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기 활동은 적절한가?
- ✍ 시설물의 유지관리 활동이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 하여 시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을 개량하고 추가시설물을 건설하는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의미하다.
- 🖾 예방적 유지관리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 공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의미한다.
- 🖾 관련 안전 법규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 4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은 적절한가?
- 🙇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이란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한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 관리되는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 🖎 수요분석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업모델 개발:적용은 시설물 이용 활성회를 위한 세미나, 자문 및 연구 활동, 컨설팅 등 수요분석 기반의 컨텐츠 발굴 및 적용 노력을 의미한다.

### 세부 평가 방법

평가

내용 정의

> △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기관의 규모, 시설 노후화 정도, 운영시설의 다중이용 여부, 시설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7	디표명	시업수입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시업	관리번호	5-2-	1-2-0
7	정 의	☞ 공기업의 사업수입을 증 금액의 향상된 실적을 평	대시켜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여 명가한다.	하기 위한 것	으로 :	수입
ı	배 점	7.0점(정량 7.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ul> <li>산식</li> <li>평점 = 당해연도실적</li> <li>최고목표 -</li> <li>● 최고목표 : ∑ (전년도 단</li> </ul>	¥ 100			7.0

평가 내용	<ul> <li>☎ 사업수입은 평가대상년도에 공기업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으로, 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li> <li>☎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li> </ul>
정의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복지 관련 사업(노인복지회관, 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유사한 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등) 수입은 제외한다.

지표명	1인당 시설관리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시업 관리	리번호	5-2	1-3-0
정 의	☞ 관리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 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1인당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 시·	 설물
배 점	5.0점→6.0점(정량 5.0점→6.0점)	7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ul> <li>○ 평가내용         <ul> <li>1인당 관리실적 = (관리실적) / (관리인력)</li> <li>- 당해연도 실적 = 100 + 전시업별자표별기중치 × (시업별자표별1인당 관리실적</li> </ul> </li> <li>○ 산식</li></ul>			5.0 ↓ 6.0 (+1)

평가

내용

정의

- ▲ 관리실적이란 공기업 시설의 이용차량수, 유료이용인원수 등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은 별도 예시
- ▲ 관리인력이란 연간 인건비(결산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간접지원부서(예 : 임원·총무기획·예산·회계·인사·경영분석 등 담당부서) 인력·예산 및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등은 제외하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은 모두 포함한다.
  -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제시된 총급여합계와 비교세 소득합계를 합산 (성과급 제외)한 것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 상 보상비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
  -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근무한 인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
  - 인건비 조정 : 당해연도 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률 해당분(전년도 인건비 x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차감한다.
  - ※ 단,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통보한 인상률로 하되, 행안부 기준 초과시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 ✍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 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 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 절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 △ 관리실적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유형별로 작성한다.
- ✍ 사업별 기중치는 결산액과 인력 비율(결산서 기준 연간 인건비)을 각각 50%씩 기중평균함
  - 단,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운영, 입장료 관리 등)업무가 없이 시설물 관리(유지 보수, 청소, 방호)만을 수행하는 사업 및 입장객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사업 등은 관리면적 등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
  - 사업별 지표별 가중치는 사업별 가중치를 관리실적 수로 나눠서 계산함

###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예시)

적용대상사업	관리실적기준
주차관리사업	연간 주차수입금액
유료도로 관리사업	연간 통과 차량수
견인사업	연간 피견인차량수
공원유원지관리사업	연간 시설관리면적
화장(장묘)관리사업	연간 화장건수 ※ 대인, 소인 등 일반화장에 한함(개장, 사산 등 제외)
터널청소사업	연간 터널 청소면적
도로관리사업	연간 도로관리면적
가로 <del>등</del> 관리사업	연간 관리등수
수영장운영사업	연간 수영장 이용인원
회관시설물관리사업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청소년수련원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지하상가관리사업	(1-미수금 평잔 비율), 연간 시설관리면적
유통단지관리사업	입주업체 양도양수 승인건수, 연간 시설관리면적, 연간 시설관리비용
굴착도로 복구사업	연간 시설복구면적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수량
임대사업	연간 관리임대면적, 연간 임대수입
현수막게시대사업	연간 현수막 게시건수
청소사업	연간 청소면적, 쓰레기수거량
재활용선별장사업	연간 재활용품 판매량
폐기물매립장	폐기물매립량
장례식장	장례건수, 장례수입금액
환경처리사업	시설용량

### 세부 평가 방법

### □ 경영효율성과

지표명	대행시업비절감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5-2-	2-1-0
정 의	☞ 공기업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위사업장에 소요도 절감으로 평가한다.		
배 점	8.0점(정량 8.0점)	정성	정량
세부	○ 평가용 : 대행시업비(천원) = ∑ (단위시업의 조정 후 비용) ○ 산식		
평가 내용	평점 = <u>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u>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90% ➡ 최저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150%		8.0

### □ 세부평가방법

평가 내용 정의	<ul> <li>☑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 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li> <li>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li> <li>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0.5%)을 차감한다.</li> <li>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 교육훈련비, 장례시설 상품(음식포함) 매입에 소요된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li> <li>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자본예산 제외)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 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대행사업비에 포함</li> </ul>
	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조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 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지표명	노동생신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5-2	<del>2-2-</del> 0
정 의	☞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점)	정성	정량
	○평ાഢ:		
	1인당 부가가치(천원) 1인당 부가가치(천원/인) = 임직원수(인)		
세부 평가	○ 산식		2.0
내용	평점 = <u>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u>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 초저목표: 0%		

평가 내용 정의

###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발행일 2022년 1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지방공기업평가원

☑ 본 편람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